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안내

1)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이수

교육 대상	교원자격검정 대상 학부생, 교육대학원생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이수
이수 시기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학년도별 실습 1회 이수

2) 교내교육 운영

교육 운영	학기별 4회 교육 실시 (주간 2회, 야간 2회)
교육 신청	교육대상자가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에서 당해 학기 교내교육 직접 신청 ※ 학기초 학기 일정 공지
교육 방법	외부 강연자가 대학 내 교육공간에서 이론(1시간)과 실습(2시간) 강의
결과 확인	인제정보시스템 교직이수자가진단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일자] 확인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내교육은 수료증 또는 확인증 발급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교외교육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교육)을 인정함.

3) 교외교육(개인별) 이수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A)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4시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기간제교사포함)들이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경우 **위 두 사항에 한하여 학년도 1회의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1회는 반드시 교내교육을 이수해야함.

■ 교외교육(개별이수) 절차

- ① **[서식] 교외이수(개별) 신청서** 교직과정부로 제출 -> ②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 「교외교육」신청 -> ③ 개인별 교외교육 실시 (실습비용은 본인 부담) > ④ **A)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이수증’제출 / B)현직교사(기간제교사포함)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 소속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확인서 1부** -> ⑤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이수 확인

■ 교외교육(개인이수) 인정 학기

교외교육(개별) 교육일자	인정학기	비고
당해연도 2월 ~ 당해연도 7월	당해학년도 1학기	교육일자에 따른 인정하기로 기간내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하여야 함.
당해연도 8월 ~ 차기연도 1월	당해학년도 2학기	

[서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외이수(개별) 신청서

대학(원)명		학 과 (전 공)	
학 번		학 년	
성 명		연 락 처	
개별이수 신청내용 (교외교육 이수)	기관/교육명		
	교육일자	년 월 일	이수학기
	사유		
			전산신청 접수
			행정실 접수
<p>년 월 일</p> <p>신청자 : (인)</p>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외이수(개별) 신청안내

-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4시간)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경우
- 위 두 사항에 한하여 학년도 1회의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1회는 반드시 교내교육을 이수해야함.

■ 교외교육(개별이수) 절차

- '[서식] 교외이수(개별) 신청서' 교직과정부로 제출 ->
-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 「교외교육」신청 ->
- 개인별 교외교육 실시 (실습비용은 본인 부담) >
- A)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이수증'제출 / B)현직교사(기간제교사포함)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 소속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확인서 1부 ->
-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이수 확인

■ 교외교육(개인이수) 인정 학기

교외교육(개별) 교육일자	인정학기	비고
당해연도 2월 ~ 당해연도 7월	당해학년도 1학기	교육일자에 따른 인정학기로 기간내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하여야 함.
당해연도 8월 ~ 차기연도 1월	당해학년도 2학기	